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408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4085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가단1308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신경환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도승환

변론 종결2023. 6. 15.

판결 선고2023. 8. 17.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가단1308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9. 1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조합에 대한 부분은 패소한 위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 후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미옥

판사홍순욱

판사이영훈

별지